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. 1. 24 선고 2018가단3829 판결 [임대차보증금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1. 10.

판결 선고 2019. 1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7. 24.부터 2018. 11. 29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혜정

별지